#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0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김문수・박지원・서미화

김우영 · 허성무 · 한준호

이수진 · 김동아 · 이재관

박해철 · 이용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 나.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함.

###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1) 소관 사무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조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도록 함.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갈등의 예방과 해결 과

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함.

- 라.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1)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둠.
  - 2)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며,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3)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이 안건이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 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 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 운영(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1)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론화대상선정 위원회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 를 둠.
  - 2)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하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에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갈등"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2.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 제4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 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 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 종합시책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3.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관리 계획
- 4.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 5. 갈등관리 실적 · 역량에 따른 소속 직원 포상 등 지원 계획
-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같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 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36조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 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갈등의 예방 과 해결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 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 성한다.
  - ③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협의회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협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과정은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유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은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 제15조(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 공론화 대상 의제(議題)를 선정하고,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 2. 제25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 3. 공론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 4. 그 밖에 공론화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 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정위원회 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선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 3. 선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정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선정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선정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제20조(선정위원의 신분보장)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19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1조(선정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해당 안건이 선정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선정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 3. 선정위원이나 선정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선정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22조(공론화 의제의 제안 등) ①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 의 장은 해당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 의 장은 해당 공공정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의제 제안권이 있는 자인지 여부
- 2. 공공성
-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 4.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 5.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 발전에 미치는 영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 의제의 제안 요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선 정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24조(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제23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 화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론화 진행방식의 결정 추진에 관한 사항

- 2. 공론화와 관련한 대국민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공론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4. 공론화와 관련한 국민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5. 공론화 결과의 종합ㆍ정리 및 권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제25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론화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공론화위원장이 아닌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공론화 의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공론화위원회의 운영)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장이 정한다. 다 만,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공론화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신분보장·의무 및 제척·회피에 관하여는 제18조세3항·제4항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로, "선정위원장"은 "공론화위원 장"으로, "선정위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제27조(여론조사) 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여론조사를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여론조사기관·단체"라 한다)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8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공론화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론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론조사의 목적 · 내용 및 기간
  -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휴대

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 다.

-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 5. 그 밖에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후 공론화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론화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론화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여론수렴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공론화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공론화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5.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⑦ 공론화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여론 조사를 의뢰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 상번호를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8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

- 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⑨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
  ・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론화위원회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ㆍ제공에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여론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의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해당 공론화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②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과 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관보 또는 선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장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30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갈등관리지원센 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 연구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 발·보급·지원
  -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교육·양성
  -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요

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 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사례 등을 포 함한 갈등관리지침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기본 원칙 및 절차
  - 2. 갈등조정협의회의 실무 절차 및 사례
  - 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 및 적용 사례
  - 4. 분야별 갈등관리 방안
  -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소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갈등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한다.
- 제32조(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 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 제33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①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라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포상) 정부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35조(정보화시스템)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절차·기법 등의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6조(재정지원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 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 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한 자
  - 제28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공론화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 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3. 제28조제6항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 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4. 제28조제6항제6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 5. 제2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같

- 은 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자
- 6. 제2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 7.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 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 2. 제2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 관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는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로 본다.